

1. 개정이유

혁신조달과 관련하여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수요기관이 테스트가 끝난 혁신제품을 계속 사용·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의사 조회 대상에서 혁신제품을 제외하고,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일부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사용의사 조회 대상에서 혁신제품을 제외
(안 제 55조)

조달청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혁신제품을 지정·구매하여 희망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‘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’을 추진 중임. 현재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교환, 양여, 매각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다른 기관의 사용의사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으나,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의사 조회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불용결정한 혁신제품에 대해 다른 중앙기관의 사용의사가 있는 경우 당초 시범사용한 지자체·공공기관에 무상양여 할 수 없는 사례 방지

나.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3조 외)

1)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의 권고사항을 반

영하여 일부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

2) “시달”, “관능검사(官能檢査)”, “수불”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0. 23. ~ 12. 1.) 결과, 특기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 제목“(물품수급관리계획의 시달 등)”을“(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달”을 “통지”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달”을 “통지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달”을 “통지”로 한다.

제27조제5항 중 “관능검사(官能檢査)”를 “관능검사[인간의 오감(五感)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 검사]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제1호나목 중 “수불(受拂)”을 “출납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내용연수 경과, 수리비 지출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사용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
2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을 영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

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1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(앞 쪽)

제 호

감 사 증

사 진

3cm×4cm

(모자를 벗은 상
반신으로 배경 없
이 6개월 이내에
촬영한 것)

성 명

조 달 청

55m×85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불용품 해체·폐기조서

① 관련문서번호					
② 장 소					
③ 일 자					
집 행 자	④ 직위(직급)	⑤성명			인
참 관 자	⑥ 직위(직급)	⑦성명			인
⑧ 물 품분류번호	⑨ 품 명	⑩ 품 목	⑪ 단 위	⑫ 수 량	⑬ 금 액
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					
⑮ 해체할 때의 활용 가능 부품명세 (적을 난이 부족할 때에는 별첨)					
⑯ 그 밖의 사항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물품수급관리계획의 <u>시달</u> 등)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확정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물품관리관(총괄물품관리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총괄물품관리관)에게 <u>시달</u>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.	제23조(물품수급관리계획의 <u>통지</u>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<u>시달</u> 받은 총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계획에 따라 각 물품관리관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(이하 “분임물품관리관”이라 한다)의 소관별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구분하여 이를 <u>시달</u>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통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지</u> -----
③ 제2항에 따라 소관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<u>시달</u> 받은 물품관리관이나 분임물품관리관은 관계 물품운용관 및 계약담당공무	③ ----- <u>통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	-----.
제27조(재물조사) ① ~ ④ (생략)	제27조(재물조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4항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는 경우에는 <u>관능검사</u> (官能検査)의 방법으로 하되, 관능검사로 물품의 상태를 분류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화학시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<u>관능검사[인간의 오감(五感)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 검사]</u> ----- -----.
제31조(재물조정) ① 물품관리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아 법 제20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재물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.	제31조(재물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감량이 발생하였을 것	1.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수불</u> (受拂)의 착오	나. <u>출납</u>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55조(활용가능품의 처리) ① 물품관리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	제55조(활용가능품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

